장학금지급규정 개정(안) 심의서

1. 규정 개정 취지

· 별표3의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기준 신설(2024.01.12.) 당시 이전 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부재로 타 조항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경과조치 추가

2. 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부칙

- (경과조치)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기준 신설(2024.01.12.)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 세계 유명 대학의 기준은 입학년도 당시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공지)를 따른다. 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선발인원은 연간 1명 이내로 한다. (단, 입학년도에 선발 공고가 미공고된 경우 직전년도 공고(공지)를 따른다.)

3.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부 칙 신 설	부 칙 (경과조치)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기준 신설(2024.01.12.)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 세계 유명 대학의 기준은 입학년도 당시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공지)를 따른다. 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선발인원은 연간 1명 이내로 한다. (단, 입학년도에 선발 공고가 미공고된 경우 직전년도 공고(공지)를 따른다.)

[개정전문]

장학금지급규정

제 정	:	2003. 10. 1
개 정	:	2004. 1. 2
개 정	:	2004. 11. 1
개 정	:	2005. 7. 20
개 정	:	2007. 9. 1
개 정	:	2008. 9. 1
개 정	:	2009. 1. 20
개 정	:	2009. 9. 1
개 정	:	2010. 3. 1
개 정	:	2010. 6. 1
개 정	:	2011. 7. 1
개 정	:	2012. 1. 1
개 정	:	2012. 6. 1
개 정	:	2013. 1. 1
개 정	:	2013. 9. 1
개 정	:	2015. 8. 1
개 정	:	2016. 8. 1
개 정	:	2017. 4. 18
개 정	:	2018. 5. 21
개 정	:	2019. 2. 11
개 정	:	2020. 3. 1
개 정	:	2020. 6. 15
개 정	:	2020. 12. 22
개 정	:	2021. 8. 20
개 정	:	2023. 5. 4
개 정	:	2024. 1. 12
개 정	:	2024. 11.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6조에 의거하여 각종 장학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1.12.>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의 선발기준과 장학금의 지급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사무분장) 장학업무는 교학지원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23.05.04., 2024.01.12.>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 구성) ①장학금 지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그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 경영관리처장, 4명 내외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22., 2023.05.04., 2024.01.12.>

③전항의 교직원은 총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05.04., 2024.01.12.>

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지급액의 책정기준 및 배정심사에 관한 사항
4. 외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학생 해외 장학연수에 관한 사항
6. 장학금지급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회의는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사항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장학금의 종류 · 신청자격 · 지급금액

제7조(장학금의 종류 · 자격 · 지급금액) ①장학금의 종류, 자격 및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확정된 지급금액이라도 외부장학금을 수혜할 경우에는 외부장학금을 우선하여 확정된 지급금액에서 외부장학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

②외부장학금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이는 각 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 총액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표 1에 기재된 근로장학금, 외부지정장학금, 학업 장려 등을 위해 명시된 장학 혜택은 예외로 적용한다.

④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장학금의 종류·자격·지급금액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장학생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벌이 해제된 후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 자격을 제한한 자
3.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
   가. 1학기 내지 6학기 : 15학점 미만. 다만, 성적경고(예비성적경고)자, 해외교환학생파견자는 12학점 미만
   나. 7학기 : 9학점 미만
4. (삭제)<삭제 2020.12.22.>

제4장 장학생 선발

제9조(장학금의 신청) ①각종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이후 학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5.04., 2024.01.12.>

1. 보훈장학금 : 수업료 면제대상 증명서 1부<개정 2024.01.12.>
2.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3. 국가고시장학금 : 국가고시 합격증 사본 1부
4. 기타 교학지원처에 신청을 요하는 장학금 : 해당 구비서류 1부

제10조(지급계획서의 심의와 승인) (삭제)
제11조(장학생의 확정) 교학지원처는 수혜대상 학생에 대하여 자격요건, 이중추천 여부, 지급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개정 2023.05.04., 2024.01.12.>
제12조(장학생 공고) 삭제<개정 2023.05.04.>
제13조(장학증서 발급) 교학지원처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장학증서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05.04., 2024.01.12.>

제5장 장학금 지급

제14조(지급방법) ①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감면금액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각종 장학금에 이중으로 선발되는 경우 해당 장학금 중 지원금액이 많은 장학금만 지급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해외연수장학금 및 해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등 해외대학(원)의 학습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한화로 지급한다. 단 환율은 지급하는 달의 첫째 날 최고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4.01.12.>
제15조(현금지급 금지) 장학금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구입비 및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등록금의 환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1. 장학생으로 확정된 학생이 이미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
2. 등록기간 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제17조(지급결정 유효기간) 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으로 등록을 필하고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까지의 유효장학금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0.03.01.>

사 유 발 생 일	유 효 금 액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	장학금 전액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	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입대, 질병, 육아, 장기인턴십, 창업 휴학 등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이 복학 학기까지 유효하다(증빙서류 필요).
③등록기간 중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지급결과 보고) 교학지원처장은 장학금지급결과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5.04., 2024.01.12.>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숙사비 관련 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장학금의 성적 기준 적용은 2010학년도 장학생 선발부터, 원각불교장학금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만, 원각불교장학금 관련 사항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과조치)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기준 신설(2024.01.12.)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 세계 유명 대학의 기준은 입학년도 당시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공지)를 따른다. 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선발인원은 연간 1명 이내로 한다. (단, 입학년도에 선발 공고가 미공고된 경우 직전년도 공고(공지)를 따른다.)

(별표 1) 장학금의 종류 · 자격 · 지급금액

종 류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신입생장학금	원각불교 장학금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1학년 1학기에 한함)	수업료 전액면제<개정 2024.01.12.>	
	전교수석 장학금		항목 삭제		2011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
			전교 수석입학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개정 2024.01.12.>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개정 2024.01.12.>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50만원)	2020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 (기수혜자 혜택 유지)
	수시우수 장학금		수시모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개정 2024.01.12.>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개정 2024.01.12.>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2021학번 이후
	수능성적 우수 장학금	A	항목 삭제		2011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
			수능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2개영역이 1등급 이내인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개정 2024.01.12.>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개정 2024.01.12.>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00만원)	2020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 (기수혜자 혜택 유지)
	정시우수 장학금		정시모집 수능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개정 2024.01.12.>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개정 2024.01.12.>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2021학번 이후
금강인재장학금	학업최우수 장학금		매학기 각 학부(전공)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10 이상<개정 2024.01.12.> (직전학기 교환학생은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	해당 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20만원)	
	비교과참여장려 장학금		삭제<개정 2023.05.04.>	삭제<개정 2023.05.04.>	2023학년도 1학기부터 <개정2023.05.04.>
	천태금강 장학금		불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 함양 및 세계적 역량의 인재양성 등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별표 2의 장학 기준에 충족하고 일정 기준의 성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 3.20 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개정 2024.01.12.> - 2.90 이상 : 등록금 50% 면제 <개정 2024.01.12.> * 단, 해외 교환학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 경우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금강복지장학금 (편입생)		편입생으로 입학한자로서 별표 2의 장학 기준에 충족하고 일정 기준의 성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	등록금 전액면제(3학년 1학기에 한함)<개정 2024.01.12.>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 2.90 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3학년 2학기에 한함, 이후 천태금강장학금 기준에 따름)<개정 2024.01.12.>	2021학번 이후 편입생에 한함
	국가고시 장학금	A	재적 중 국가고시(5급 공채,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1차 시험 이상 합격한 자	사유발생 다음 학기부터 1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학업장려금 100만원 지급(1회에 한함) 단, 휴학생은 복학 후 지급	
		B	재학 중 국가고시 준비반 입반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모의고사 및 성적우수자 - 교수 추천자 단,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20 이상<개정 2024.01.12.>	매학기 인원을 산정하여 선발된 학생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공로장학금		총학생회, 학교부속기관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단, 활동기간의 매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20 이상<개정 2024.01.12.>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면제, 사유발생 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학업장려금 지급 - 총학생회장 : 30만원 - 그 외 : 20만원<개정 2024.01.12.>	총학:2명이내 부속기관 및 학생자치기구:2명
	봉사장학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봉사활동실적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종 류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학술활동 장학금	교내외 학술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자로서 총장이 인정한 자.	해당학기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해외연수 장학금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최종 선발된 학생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최종 선발된 학생 단, 복수학위 과정 연수 후 본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관련 학비 지원 지침 적용)	「국내 및 해외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 및 대외교류위원회 심의에 근거하여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외국인학생 장학금	학교 또는 재단 초청으로 본 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 단, 직전학기 성적이 2.90 이상<개정 2024.01.12.>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개정 2024.01.12.> -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20만원)	
	근로장학금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90 이상<개정 2024.01.12.> 학교 의무 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선발(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개정 2024.01.12.>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단,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적용 없음	졸업시까지(8학기) -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금 전액 - 국가유공자(손)자녀: 등록금 전액(본교 및 국고 각 50%부담)	
	교육보호 장학금	항목 삭제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 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후 관련 해당 서류 제출)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개정 2024.01.12.> -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는 당해 학기 보조를 제한하며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함	2021학번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제3국출생 탈북자녀인 자 ※ 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기본증명서 상 "국적선택"란에 "대한민국"으로 명시되고 "법무부장관"에 통보된 자)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 2.90 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 2.20 이상 : 등록금 50% 면제<개정 2024.01.12.>	2021학번 이후
	복지 장학금 A	신입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24.01.12.>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개정 2024.01.12.>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2012학번 이후
	복지 장학금 B	신입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개정 2024.01.12.>	2년간(4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개정 2024.01.12.>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기여장학금	학업장려를 위하여 해당 학생이 외부장학금을 본교에 등록금으로 입금한 자	유치 외부장학금 중 등록금 초과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0.12.22.>	2020학년도 이전 신·편입생
		학업장려를 위하여 해당 학생이 외부장학금을 본교에 등록금으로 입금한 자	유치 외부장학금 중 등록금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0.12.22.>	2021학년도~2022학년도 신·편입생 <개정 2023.05.04.>
		기여장학금은 학생 개인에게 현금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생 시설 개선, 학생 복지 증진 등 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05.04.>		2023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사생회장학금<신설 2024.01.12.>	해당 학기 사생회 총장으로 선발된 자 <신설 2024.01.12.>	매월 30만원 지급(단, 학기 중에 한하며, 방학은 제외. 또한 매월 사생회 활동보고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함)<신설 2024.01.12.>	학기당 3명 이내<신설 2024.01.12.>
금강 우수 졸업 진학 장학금	해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해외우수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자로 별표 3의 기준에 충족하는 자.<개정 2024.01.12.>	지급기간은 2년이며 연간 영어권 14,000USD, 일어권 10,000USD, 중어권 7,000USD 지급	연간 10명 이내
	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본교가 정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 단, 졸업성적평점평균이 3.90 이상.<개정 2024.01.12.> (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 지침 적용)	지급기간은 3년이며 연간 1,000만원 지급	연간 2명 이내
외부 장학금	기부장학금	기부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	기부장학금의 유형에 따라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	졸업시까지(8학기)	

종 류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가 유공자 및 그 자녀<개정 2024.01.12.>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단,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적용 없음	-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금 전액 - 국가유공자(손)자녀: 등록금 전액(본교 및 국고 각 50%부담)	
	교육보호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 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후 관련 해당 서류 제출)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개정 2024.01.12.> -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는 당해 학기 보조를 제한하며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함	

* 계속장학생의 경우(전교수석·수시우수·수능성적우수·정시우수장학금) 수혜자격 미달 시 졸업까지 해당 장학금 지급 중단<개정 2024.01.12.>

(별표 2) 천태금강장학금 선발 기준<개정 2024.01.12.>

평가항목	매학기 기준	세부내용
비교과활동	매학기 전략혁신처에서 인정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1개 이상 참여하는 학생 <개정 2023.05.04.>	학생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전략혁신처에서 확인 <개정 2023.05.04.>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	10 GOLD 당 0.1점으로 환산하여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과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장학생 선발 기준 이상	GOLD사용신청서를 전략혁신처에 제출<개정 2023.05.04.>
금강아카데미 참여	삭제<개정 2023.05.04.>	삭제<개정 2023.05.04.>
시험부정행위	부정행위는 1회이상 적발 시 선발제외	시험감독 교수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확인과 인적사항 통보 시 적용 (학생상벌위원회 회부)
학칙위반 및 평소품행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적용

* 학사경고자의 경우 학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 프로그램 미이수 시 장학생 선발에 제한될 수 있음<신설 2024.01.12.>

(별표 3)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기준<신설 2024.01.12.>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원기간</td><td>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중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지원</td></tr>
<tr><td>지원자격</td><td>- 졸업성적평점평균이 3.70 이상인 자로 학칙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대학 졸업 후
가. 석사과정: 2년(군 복무기간 제외)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박사과정: 4년(군 복무기관 제외)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The Times 기준 World University Ranking 100위 이내의 해외우수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자(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진입한 대학)
- 유학국 별 지정 외국어시험 성적 취득자(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점수에 한함)
<table>
<tr><th>국가</th><th>시험명</th><th>기준</th></tr>
<tr><td rowspan="2">영어권</td><td>TOEFL</td><td>iBT 88이상 / PBT 570이상</td></tr>
<tr><td>IELTS</td><td>Overall Band Score 5점 이상</td></tr>
<tr><td>유럽어권</td><td colspan="2">해당 국가의 공인된 외국어시험 합격자</td></tr>
<tr><td>일본어권</td><td>JLPT</td><td>* 일본어 관련 전공자 : JLPT 1급(N1) 이상 또는 JPT 715점 이상
* 일본어 전공 이외 타 전공자: JLPT 2급(N2) 이상 또는 JPT 540점 이상</td></tr>
<tr><td>중국어권</td><td>HSK</td><td>* 중국어 관련 전공자 : (신)6급
* 중국어 전공 이외 타 전공자 : (신)5급 210점 이상</td></tr>
</table></td></tr>
<tr><td>제출서류</td><td>-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금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연구계획서 1부.
- 유학국별 지정 외국어 성적표 사본 1부.
- 해외대학원 입학허가서 및 등록 관련 서류 각 1부.
-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td></tr>
<tr><td>선발절차</td><td>- 장학위원회에서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생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면접평가를 통해 연간 10명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 장학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70점 이하인 지원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 면접점수의 최저, 최고점은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한다.
- 장학생 선발 후 최초 장학금 지급 전 대학 변경에 대한 타당한 사유 발생 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td></tr>
<tr><td>장학금지급</td><td>- 장학금은 연간 지급액을 상·하반기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1년 3학기제의 경우 예외로 한다.
- 최초지급액은 입학허가서를 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고, 차기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언어권별 장학금 지급금액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국가</th><th>지급기간</th><th>연간지급액</th><th>비고</th></tr>
<tr><td>영어권·유럽어권</td><td rowspan="4">2년</td><td>14,000$</td><td rowspan="3">학위과정이 1년 3학기제인 경우
(연간지급액/2)*3회로 지급</td></tr>
<tr><td>일본어권</td><td>10,000$</td></tr>
<tr><td>중국어권</td><td>7,000$</td></tr>
<tr><td>기타 언어권</td><td colspan="2">한국정부 국비유학 장학생의 지급금액을 참고하여
그 금액이 유사한 언어권의 지급액을 지급</td></tr>
</table></td></tr>
<tr><td>장학금 지급제한</td><td>- 장학금 지원기간 중 학업성적이 80/100점만점 미만일 경우 차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휴학 시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복학하는 학기에 재지급한다.
- 외부장학금 수혜 시 이중지원이 가능하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td></tr>
<tr><td>장학금 환수</td><td>- 장학금 지급 후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한다.
- 장학금 수혜기간 중 자퇴, 제적 등을 포함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td></tr>
<tr><td>기타사항</td><td>-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td></tr>
</table>